

#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김위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60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24.

발의자 : 김위상 · 박성훈 · 박충권  
신동욱 · 우재준 · 김태호  
서명옥 · 최은석 · 김선교  
신성범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정의하면서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규정을 제정·시행하도록 하는 등 공간정보 관리에 관련된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, 이와는 별도로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작성 또는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 있음.

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댐·하천·발전시설 등 주요한 공간정보를 생산·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관리기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관리기관 및 기본계획·시행계획의 작성 또는 수립 업무와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후에너지환경

부장관이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2조·제6조 및 제7조).

법률 제 호

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중앙행정기관”을 “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중앙행정기관”으로 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관계”를 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· 제2항 및 제4항 중 “관계”를 각각 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“관리기관”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<u>중앙행정기관</u> 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“공공기관”이라 한다)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 기관을 말한다.	4. ----- ----- <u>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중앙행정기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5. ~ 7. (생 략)	5. ~ 7. (현행과 같음)
제6조(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) ① · ② (생 략)	제6조(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<u>관계</u>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소관 업무에 관한 기관별 국가공간 정보정책 기본계획(이하 “기관별 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

③ (생 략)	
④ 국토교통부장관, <u>관계</u>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확정 또는 변경된 시행계획 및 기관별 시행계획을 시행하고 그 집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.	<u>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</u>
⑤ · ⑥ (생 략)	